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17호 2025. 6. 2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857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6월 2일

예 천 군



1. 제정이유

- 사회취약계층 등의 생활 불편 사항의 처리를 위한 예천군 복지기동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의 정의(안 제2조제3항)

- 지원 대상은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말하며, 그 밖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사회취약계층으로

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함.

나. 복지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
- 복지기동대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, 긴급한 경우 휴일 또는 야간 운영
- 복지기동대 민원 처리 기한 :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함
- 복지기동대 민원 접수 범위 : 전기, 설비 분야, 소규모 수리 등

다. 재료비 및 장비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
-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지원 가능
- 장비 및 예산확보 규정
-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 지원 규정

라. 복지기동대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3조)

- 복지기동대 운영에 관한 대장 관리 의무사항 규정
- 매년 운영 결과 보고서 징구를 통한 평가 및 분석 실시

3. 제정조례안 : 별첨

4 의견제출

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cavalyy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사회복지과

3) 팩스 : 054-650-62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(전화: 054-650-6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 및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예천군 복지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등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복지기동대”란 사회취약계층 등의 생활 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.

② “생활 불편 사항”이란 별표 1의 사항을 말한다.

③ “사회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3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5.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
6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대상자 중 홀몸 또는 부부
7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에
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애국지사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
제후유의증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8. 그 밖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사회취
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복지기동대 설치 등) 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 불편 사항
의 처리를 전담하는 복지기동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운영의 편의를
위해 신고 전용 접수창구 설치 및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복지기동대의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복지기동대의 운영) ① 복지기동대의 근무 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
무규정」 제2조에 따른다. 다만, 긴급한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휴일 또
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생활 불편 사항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신청일에 처
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
처리한다.

제5조(복지기동대의 임무) ① 복지기동대는 다음의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
을 처리한다. 다만,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
은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에 이첩한다.

1. 전기분야: 전등, 콘센트, 스위치, 환풍기 등 교체 및 수리

2. 설비분야

가. 배관시설(싱크대, 세면대, 변기 등)의 부속품 교체 및 수리

나. 샤워기, 수도꼭지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

3. 그 밖에 생활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(청소,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 불편 사항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생활 불편 사항 또는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생활 불편 사항

2.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생활 불편 사항

3. 빈집, 상가 등 영업시설, 비주거용 건축물 및 종교시설

4. 공동주택 및 원룸 등의 다세대 건물

③ 복지기동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처리 접수·처리 대장,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장비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자원봉사단체(“자원봉사자”를 포함한다) 및 기관·단체가 생활 불편 사항 처리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복지기동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신청 방법) 생활 불편 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 전용 접수창구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료비 지원) ① 생활 불편 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재료비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장비 및 예산의 확보) ① 군수는 생활 불편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·단체의 생활 불편 사항 처리 서비스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대장 관리) 복지기동대는 생활 불편 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1. 민원처리 신청서: 별지 제1호서식
2. 민원처리 접수·처리대장: 별지 제2호서식
3. 민원처리 장비 대장: 별지 제3호서식
4. 민원처리 장비 관리카드: 별지 제4호서식
5. 민원처리 소모품 출납대장: 별지 제5호서식

제10조(운영 결과 보고) ① 복지기동대는 매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운영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운영 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, 처리, 주요 활동 내용,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홍보) ① 군수는 복지기동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 불편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복지기동대 사업 추진 시 대상자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제12조(사무 위탁) 군수는 생활 불편 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지도·감독)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생활불편사항 세부사업 내역

분 야	세부 범위	비 고
전기·전등	전등 교체 및 리모컨 스위치, 전등 스위치, 콘센트 커버(소켓), 스위치(차단기) 퓨즈, 안정기 등 교체	주택에 한함
수도·배관	수도꼭지, 변기·세면대, 샤워헤드, 싱크대 부속 등 교체	변기 시멘트 공사 불가
소규모 수리	못박기, 문고리 교체, 실리콘 작업, 방충망 부분 보수	
기타 불편 사항	패킹 교체	
	기타 주민불편사항 중 처리 가능 작업	
	주택 내·외 장애물 소규모 전지 작업	

< 사업 제외 대상 >

- 빈집, 상가 등 영업시설, 비주거용 건축물, 공동주택 및 원룸 등의 다세대 건물(건물주 처리), 종교시설 등
- 전문업체 등에서 처리할 공사 성격의 작업
(예시)보일러 수리, 도배·장판, 수도관 동파·동결 수리, 배수관 뚫기, 바닥 보수(시멘트), 변기 보수(시멘트), 방수 처리, 집 전체 수리, 난간 설치, 높이 발판 설치, 생활용품·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, 안전바 설치 불가, 전기배선 보수 등
- 가전제품·보일러수리·냉매보충 등 전문기술을 요하거나, 판매 업체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수리 가능한 사항
- 서비스 제공 범위 외 의뢰건 및 거주 환경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음을 신청 시 필히 안내

[별지 제1호 서식]

민원처리 신청서

접수	번호	2025-00		처리 결과	[]처리 []처리불가		
	유형	[]전화 []방문			불가사유:		
신청내용	신청인		연락처				
	대상자관계		[]본인 []동거가족 []비동거가족 []기타()				
	대상자	성명		생년 월일		성별	[]남 []여
		자격분	일 반 취 약	[]일반 []기타()			
				[]수급 []차상위 []장애 []한부모			
				[]보훈 []노인 []조손			
		주소	경북 예천군 읍·면				
	연락처						
	요청사항		1. 2.				
특이사항							
개인정보동의	민원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※ 아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			
	☞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					동 의 []	
	1. 항목 : 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성별, 취약계층 자격정보 2. 수집·이용 목적 : 지원대상확인,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3. 보유·이용 기간 : 1년					비동의 []	
위와 같이 「예천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신청하오니,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(대상자) : (서명/인) 예천군수 귀하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민원처리 접수·처리대장

[illegible]

[별지 제3호 서식]

민원처리 장비 대장

[illegible]

[별지 제4호 서식]

민원처리 장비 관리카드

번 호			
품 명			
사 진			
구입일자			
구입금액(원)		수량	
구 입 처			

☐ 수리내용

[illegible]

[별지 제5호 서식]

민원처리 소모품 출납대장

□ 품명(규격) :

[illegible]